



교육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 개정(제3-4판) 안내

1. 관 련

가. 중앙방역대책본부-3221(2022.1.25), -4426(2022.2.7)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43432(2021.12.31) 호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제3-4판)**」을 개정·통보해와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구 분	주요 내용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 변경 (76p, 78p)	[당초] - (관리·운영자)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 - (행정처분) : (1차)운영중단 10일 → (2차) 20일 → (3차) 3개월 → (4차) 폐쇄명령 [변경] - (<u>과태료</u> , <u>관리·운영자</u>) <u>1차 위반시 50만원</u> , 2차 위반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00만원 - (<u>행정처분</u>) : (<u>1차위반</u>) <u>경고</u> → (2차)운영중단 10일 → (3차) 20일 → (4차) 3개월 → (5차) 폐쇄명령
신속항원검사 증명서 발급 관련 안내 추가(6p)	보건소로부터 위탁·운영중인 의료기관 선별진료소는 보건소 명의를 음성통보 문자 발송 및 종이 증명서 발급 가능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민간의료기관 소견서 발급시 안내 추가 (7p, 59p)	소견서는 검사기관별 양식이 다양하나, 필수정보(검사일, 음성결과, 의료기관명, 의사면허번호 등) 포함 필요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 예외확인서 유효기간 연장 관련 안내 추가(67p)	면역결핍 또는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재발급시 예외확인서 발급 가능

2.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_제3-4판 1부. 끝.

교 육 부 장 관



수신자 각실과, 고등교육기관전체, 고등외국교육기관, 소속기관, 소속단체, 시도교육청

주무관 우슬기 행정사무관 김은미 학생건강정책 전결 2022. 2. 13.
과장 정희권

협조자

시행 학생건강정책과-1187 (2022. 2. 13.) 접수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교육부 14동 (어진동) / www.moe.go.kr

전화번호 044-203-6962 팩스번호 044-203-6438 / woosg20@korea.kr / 대국민 공개